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시 유역 관련 사항의
경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의무화 〉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1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유역 관련 사항에 대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의무화	3
※ 참고자료	9
1. 물관리위원회 개요	9
2.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10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일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지난 2023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식적인 심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취소 결정했음. 이에 더해 환경부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 처리 이행계획 및 보 상시개방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위원들의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였음.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

획 수립 시 유역물관리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메일 교환 등으로 형해화·무력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건에서 유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7조).

Ⅲ. 검토의견

1. 유역 관련 사항에 대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의무화

개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후단 신설>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 ----- -----, 이 경우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유역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 -----

1. ~ 11.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국가물관리위원회의</u>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여부에 관하여 <u>국가물관리위원회</u>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u>유역물관리위원회</u>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 ----- ----- -----. -<u>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u>-----. ③ ----- ----- ----- ----- ----- ----- -----. ----- ----- ----- ----- ---하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	---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 물 관련 현안 등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물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는 유역 내 물 관련 의사결정기구로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 등 유역 내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유역별로 설치된 기구임.

현행법 제22조¹⁾에 따르면 국가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 간 물 이동 등을 심의하고, 동법 제24조²⁾에 따라 유역위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유역 내 물 이동, 유역 내 발생한 물분쟁 조정 등을 심의·의결함³⁾.

1)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2) 「물관리기본법」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3) 현행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의 하나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함)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고, 제28조제1항에서는 유역계획 수립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함)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제22조제2호에서는 국가위원회에서 ‘유역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유역계획이 국가계획과 부합하는지를 심의하도록 하면서, 제29조에서는 국가위원회가 필요 시 유역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유역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법제처 심층보고서,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24.12.12).

[국가위 및 유역위 심의 사항(법 제22조 및 제24조)]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
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이하 "국가계획") 수립·변경 ②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③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④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⑤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⑥ 물분쟁의 조정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를 당사자로 하거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분쟁에 적용 ⑦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⑧ 국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⑨ 타법에 따라 국가위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변경 ②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③ 지자체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④ 유역 내 물분쟁의 조정 ⑤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타법에 따라 유역위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 분야 최상위 전략계획으로서, 현행법 제27조4)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유역위원장 등과의 협의 및

4)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국가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 물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수재해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위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국가 물관리 현안 중 유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 내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의견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는 유역위의 별도 심의·의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역 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국가위의 심의·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위의 심의·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물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유역 내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유역위 단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절차적 타당성을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용역보고서 한 장 없이 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취소”, 한겨레, 2023. 8. 4.

“‘보 해체’ 삭제된 물관리기본계획...환경단체 등 행정소송”, 노컷뉴스, 2023. 10. 1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총체적 위반”, 환경운동연합(성명), 2023. 10. 11.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국가위 심의 절차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 (심의절차*) ①안건 제출 → ②관계기관 협의(타법률·계획 관련시) → ③분과위 사전검토(위원장 요구시) → ④안건상정 → ⑤유역위 심의·의결(신설) → ⑥국가위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①관계기관(중앙) 및 유역위원장 협의 → ②공청회 개최 → ③유역위 심의·의결 → ④국가위 심의·의결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유역위 심의 결과가 국가위 심의에서 바뀔 경우 유역위 심의가 절차상 불필요한 행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위와 유역위가 동일 안건을 중복 심의하는 것보다 국가위 위원장이 안건 심의 전 해당 유역위의 의견을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⁶⁾,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문 의 처

02) 6788-5547

6) (환경부안) 안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유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심의·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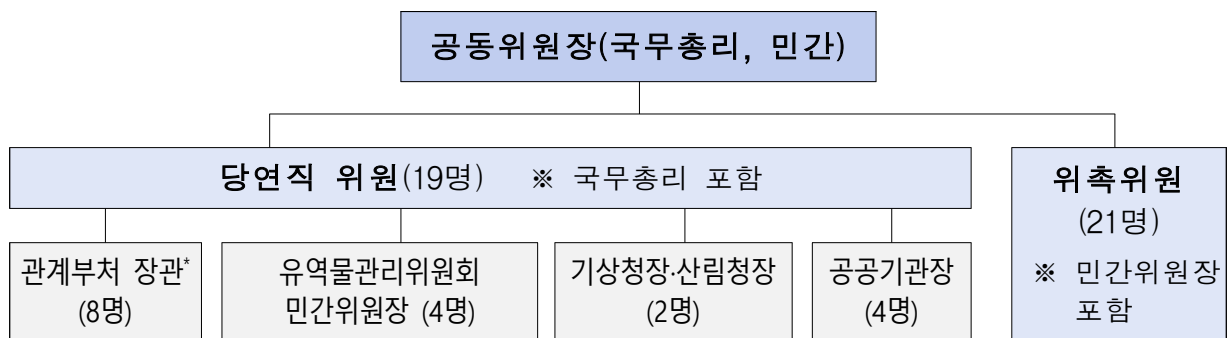
7) 법제처도 국가위와 유역위의 결정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될 경우 선후 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물관리 관련 집행 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자료 1.물관리위원회 개요⁸⁾

□ (구성) 「물관리기본법」(‘19.6.12. 시행) 제20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 (국가위)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 포함 40명(당연직 19명 포함)

- 위촉위원(민간위원장 포함)은 대학, 연구기관, 물관련 단체·기관, 법조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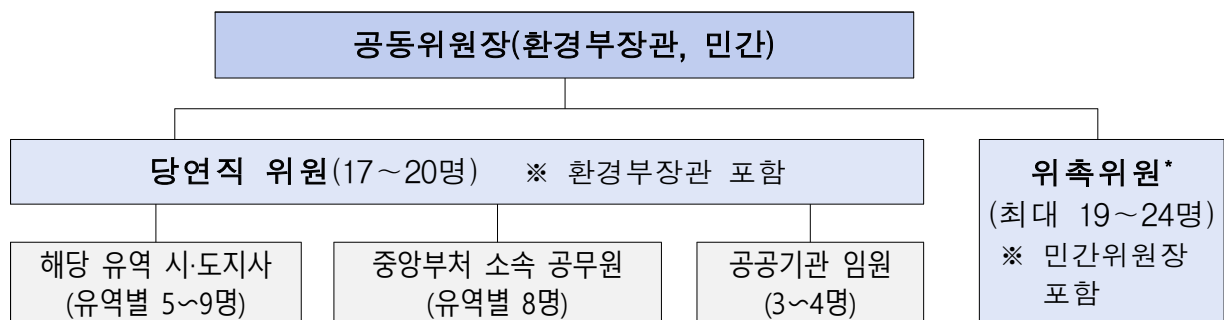


* 기재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 (유역위) 4개 유역위별로 공동위원장 2명(환경부장관, 민간) 포함 36~43명

- 위촉위원은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국가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단, 유역위 민간위원장은 국가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



* (위촉위원) 한강 43명(당연19+위촉24), 낙동강 42명(20+22), 금강 41명(19+22), 영·섬 36명(17+19)

□ (기능) 물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평가, 물분쟁 조정, 물관련 현안 등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8) 자료: 환경부

※ 참고자료 2.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 현황⁹⁾

국가물관리위원회(제2기)

□ 구성현황

당 연 직 (19명)	▶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8)기재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2)기상청장, 산림청장 ▶ (4)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농어촌공사 사장, 환경공단 이사장 ▶ (4)유역물관리위원장(한강 전경수, 낙동강 남광희, 금강 김건희, 영섬 김민환)
민간위촉 (21)	▶ 배덕호 세종대학교 총장 (공동위원장) ▶ 이주현(간사), 한건연(정책분과장), 공동수(계획분과장), 박종미(물분쟁조정분과장) ▶ 김영주((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등 민간위원 18인

○ 위촉직 민간위원

연번	성명	소속	분야	계 획 분 과	물분쟁 조정분과	정책 분과	비고
계	21			11	11	12	
1	배덕호	세종대 총장	수자원	-	-	-	위원장
2	공동수	경기대 바이오융합학부 교수	물환경	●		○	분과장
3	김영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환경단체		○	○	
4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	수자원	○	○		
5	박경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치수·방재			○	
6	박규홍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상하수도	○			
7	박대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중앙회장	농민단체	○	○		
8	박종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법	○	●		분과장
9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상하수도		○	○	
10	백규석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법조계		○	○	
11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지하수	○	○		
12	이주현	중부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수자원	○		○	간사
13	이태관	계명대 환경학부 교수	물환경			○	
14	이호식	한국교통대 인프라시스템공학전공 교수	상하수도	○	○		
15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자원		○	○	
16	정건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치수·방재	○		○	
17	최경식	신라대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	물환경			○	
18	최문진	(주)부강테크 경영총괄대표	물산업			○	
19	최종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물순환	○			
20	최진용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농업·산림	○	○		
21	한건연	경북대 방재연구소 교수	수자원		○	●	분과장

9) 자료: 환경부

유역물관리위원회(제2기)

□ 구성현황

구 분		유역위원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합 계		43	42	41	36		
당연직 위원	당연직 계	19	20	19	17		
	당연직위원장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소계	7	9	8	5	
		유역내 관계 시·도지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 앙 부 처	소계	7	7	7	7
		유역환경청장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지방환경청장	원주	대구	전북	전북	
	소속 공 무 원	홍수통제소장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물환경연구소장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림부장관 추천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산림청장 추천	북부지방산림청장	남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기상청장 추천	수도권기상청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공공 기관 장 추천	소계	4	3	3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	충남지역본부장	전남지역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낙동강유역본부장	금강유역본부장	영·섬유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충청권환경본부장	광주·전·제·주환경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	-	한강수력본부장	
위촉직 민간위원	위촉직 계	24	22	22	19		
	위원장	1	1	1	1		
	위원	23	21	21	18		